

#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3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 5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국, 공유재산의 변상금부과징수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기하여 적극적인 변상금징수로 무단점유 국,공유재산의 시효중단조치는 물론 세입증대를 기하고 지방세 징수업무 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골자

국, 공유재산의 변상금징수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정함.

#### 3. 참고사항

- 관련법규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 제3호
- 관련지침 : 재산45511-511('94. 2. 23)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촉구
- 신, 구조문 대비표(별첨)

#### 4. 예산조치

- 시경상보조금으로 충당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       호

#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 제3호중 “도로, 하천”을 “국·공유지”로 개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 3 조(지급기준)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 1. (생략) 2. (생략) 3. 도로,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. (생략) 5. (생략)	제 3 조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국, 공유지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과 같음)